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02

발의연월일: 2025. 5. 1.

찬 성 자:이기헌·조계원·김재원

박지원 · 서미화 · 한준호

박민규 • 김영환 • 김성회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 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 수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u>공단은</u> 「기부금품의 모집·사
	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
	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
	<u>다.</u>
	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